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31 호

2006년 12월 29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60호(차령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63호(2006년도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464호(2005년도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460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7. 1. 12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12. 29 ~ 2007. 1. 12(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3거9302	조흥진	부평구 십정동519-19	인천지방법원 (2002카단8083)	정명효	서구 가좌동 396-13호
인천2러6495	최이균	계양구 병방동 328 선일빌라 A-101호	인천지방법원 (96카단31325)	이은경	부평구 청천동 48-157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6. 12. 2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463호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일 기준 직권정정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I.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06.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42-1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남동구청 세무과)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1464호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 직권정정분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I.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05.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42-1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남동구청 세무과)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